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519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화정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상우, 민예린

변 론 종 결 2023. 3. 28.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0. 8. 21.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기간은 2020. 8. 21.부터 2025. 8. 20.까지였다.

2)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한 다음, C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B가 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 원금 및 종속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C은행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를 받고, 2022. 1. 11. C은행에 B의 대출 원리금 합계 50,492,6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와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는 2020. 11. 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북 고령군 D 전 1,111㎡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D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1) E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D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21. 11. 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F).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D 토지는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3. 1.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23. 3. 2.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11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실시된 매각대금의 배당 과정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고가 원고 또는 B에게 반환할 배당금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의 진행 경과(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소의 제기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처음부터 소의 이익이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별지